

2024. 3. 21(목). 10:00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김상수 의원 등 열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공공관리제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협약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공공관리제 노선의 조정 및 운송수입금 관리를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마. 노선입찰 등 노선위탁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 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 아.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19조)
- 자. 공공관리제 중지·제외, 안전운행 방안 및 운영 지침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2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입법예고 결과 (2024. 3. 6. ~ 3. 12.)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며,

시는 본예산에서 확보한 39억원을 들여 화도·수동지역의 마석지선과 33번 노선 등 모두 13개 노선을 9개 노선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이 안정화되고 교통서비스는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상 다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명시행)되는 만큼 도에 추가적 자원 분담을 요구하는 등 재점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2023. 4. 18.>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도지사는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정 및 조정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